

# 요양비 준요양기관 유의사항 안내 (2022.7.13.)

## 《 관련 근거 》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9조(요양비),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요양비)
- 보건복지부고시 2021-331호(2021.12.27.)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관리실 제2022-1호~제2022-8호(2022.4.14.)

## 1 등록사항 적기 신고 협조 안내

준요양기관은 휴업, 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, 휴업기간 및 폐업이후 기 지급된 요양비는 부당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요양비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계약서\* 제7조 6항에 따라 휴업, 폐업 등 계약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비 급여대상자(환자)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

\*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공고 [별지 제1호서식]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

또한,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서비스금액 외 보증금 명목의 별도금액을 요구하여 민원발생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2 신고 기준 준수 요청

구분	내용
업소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(대상)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팩스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휴업한 기관</li><li>• (적용일자) 신고서 접수일(다만,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)</li></ul>
업소탈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(대상) 폐업, 등록포기, 부도 등으로 폐쇄</li><li>• (적용일자) 폐업일, 등록포기부도등은 신고서 접수일(다만, 접수한날 이전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)</li><li>※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탈퇴신고 후 공단에 신규 등록신청</li></ul>
제품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(대상)제품 폐기, 종료, 허가취하, 폐업 등</li><li>• (적용일자) 폐기일, 종료 신고일, 허가취하일, 폐업일 등</li></ul>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(신고기한) 사유발생일 14일 이내</li><li>• (신고 접수처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사 및 출장소: 당뇨소모성재료, 자가도뇨카테타, 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</li><li>- 지역본부: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, 기침유발기, 양압기</li></ul></li><li>※ 휴업기간, 폐업일, 제품신고 이후 판매 또는 임대 시 요양비 청구불가</li></ul>